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단3386 판결 [건물명도]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2. 18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 
가. 별지1 기재 부동산 1층 151.8㎡ 중 별첨 건축물현황도 3, 4, 5, 6, 7, 8,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(가)부분 99.1㎡를 인도하고,  
나. 15,400,000원 및 2024. 4. 9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 고상교

별지